

02 제350회 임시회	08 농수축경계위원회
03 의회운영위원회	09 교육위원회
04 행정자치위원회	10 입법정보
0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 사무처 소식 /
06 환경도시위원회	청탁금지법 Q & A
07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보리밭 사이로 내려앉은 봄 | 바람이 살랑거리며 초록의 물결을 만든다. 출렁이는 보리밭 사이로 봄 기운이 완연하게 내려앉았다.

4·3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회의 힘찬 발걸음

국회의장 면담, 4·3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촉구 결의안 전달

4·3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의 힘찬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4·3 특별위원회를 결성한 데 이어 올해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열린 전체의원 총회에서는 손유원 4·3 특위 위원장이 대선 공약과제에서 제외됐던 배·보상 문제를 강력하게 포함할 것을 요청하여 결국 대선 아젠다에 포함시켜냈다.

더욱이 이번 69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으면서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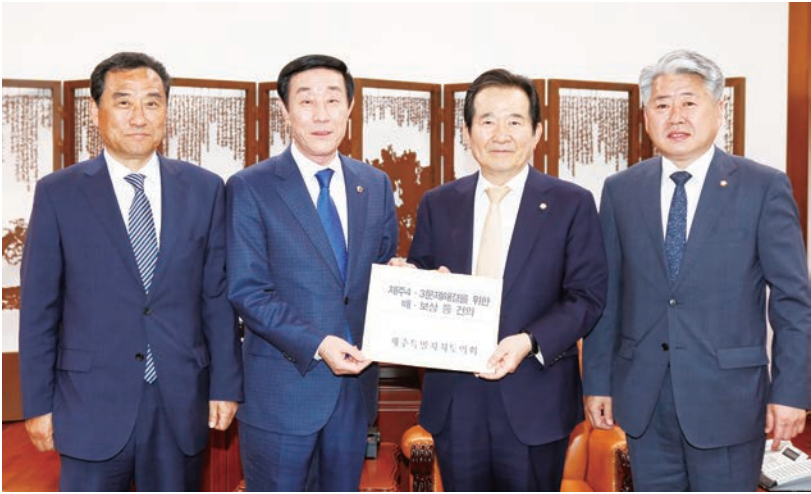
단순히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 등에 우편발송하고 마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신관홍 의장은 지난 4월 18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이 건의서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또 4월 19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 <4·3 사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를 지속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신관홍 의장은 “내년 4·3 70주년은 큰 의미가 있다. 4·3 당시 갓 태어난 아이가 이제 고회를



넘기는 세월인 점을 감안하면 4·3 해결과제가 시급하다.”는 말로 절박감을 표현했다.

신관홍 의장, 제주기점 항공사 요금인상 철회 촉구

제350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14건 등 총 29건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0회 임시회가 4월 14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벌였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주)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동의안 13건,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 등 청원 2건을 처리했다.

한편 신관홍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생명력을 뿜어내는 4월의 봄기운처럼, 제주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이 넘쳐났던 회기였다.”고 술회하고 “오라관광단지와 안보, 교육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벌어진 열띤 토론과 정책제안, 그리고 성실한 답변은 제주현안 해결에 소중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이어 “지난 개회사에서 제주항공의 요금인상에 대해 쓴 소리를 했는데, 정말로 제주의 현실에 공감하고 도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느낀다면, 항공요금 인상 방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요금인상 계획이 있다면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의장은 마지막으로 “대선이 꼭 25일 남았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부여와 4·3 완전해결, 제2공항과 강정 문제 등 대선 공약에 관철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하고, “우리 제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온 도민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드디어 날갯짓 하다

정책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통해 혁신과제 구체화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이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래기획혁신위원회의 중간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확정하는 등 첫 결실을 거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4월 1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정책과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위원장 양승문)가 주관해 열린 이번 중간보고회는 분과별 정책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보고회는 미래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및 1, 2분과 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선정한 정책과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분과 중간보고회에서는 ‘교육위원회 권한·역할 및 심의사항 검토’,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활용 방안’,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방안’, ‘의원 보좌인력 확충 방안’, ‘도의회 주민 대표성 강화-주민참여형 정책확대-홍보 강화 방안’이라는 정책과제에 대해 민기(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덕순(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해영(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호진(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등이 발표했다.

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분과 중간보고회에서는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 필요성 및 도입 방안’, ‘제주지역 노동시장 구조분석을 통한 청년고용촉진방안’, ‘주민 체감형 세계인증유산의 보전 및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제주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가공 및 유통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과제에 대해 홍연숙(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정동성(재)제주에너지경제연구원장, 강석보(주)에메니티 소장, 김윤정(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했다.

신관홍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중간보고회는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이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래기획혁신위원회의 첫 결실”이라고 규정하고, “중간보고회에서 다뤄지는 11개 과제를 어떻게 잘 추진하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몫”이라며 “절차탁마라는 말도 있듯이 더 잘 다듬고 구체화시켜서 제주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멋진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승문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중간보고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기획혁신위원회가 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폭넓은 공감을 통해 차별화된 제주만의 발전 전략을 강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5월 말까지 정책과제에 따른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는 의장 소속으로 의정현안에 대한 도의회의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정에 필요한 정책과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구로써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도의회,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그린다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 용역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의 10년 청사진이 그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향후 10년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지원체계개선 연구용역’이 4월 5일 완료됐다.

용역에서 제시된 도의회의 향후 발전과제는 23개 과제 35개 세부사업으로 단기추진(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추진), 중기과제(제11대 도의회 추진), 장기추진(제12대 도의회 추진)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입법지원체계개선 연구용역(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향후 10년 발전방안을 중심으로)’이 완료됨에 따라 이 용역을 기반으로 향후 10년의 도의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각각의 과제들은 추진의 필요성,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위원장 양승문)에 자문을 의뢰하여 세부사업 과제 추진을 위한 검증을 거치고, 필요한 경우 소규모 연구를 통하여 그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미래기획혁신위원회의 자문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내부논의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추진과제로 확정하고 이후 추진 부서를 지정하여 이행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신관홍 의장은 이번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도의회의 여러 발전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의미 있는 과제들이며, 그 추진에서는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집행부,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전협의 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 첫날인 4월 4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조례가 발의된 지 15개월 만이다.

조례안은 10대 의회 전반기 때 김천문 의원이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후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원치 않는 장애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박원철(당시 위원장), 좌남수, 허창옥, 하민철, 위성곤(현재 국회 의원) 의원과 강익자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이 함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중증장애(1~3급)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의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의정활동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당시 발의된 조례안은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보조 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경우 정원 증원이 필요한 만큼 증원 없이 임용할 수 있는 ‘기간제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11개 타 시·도 의회의 경우는 장애 정도에 따라 시간 선택제 임기제(7개 의회) 또는 기간제 근로자(11개 의회)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호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만큼 장애의원이 독자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제주 청소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다 제3차 두런두런 정책좌담회 개최

평범한 도민들로부터 생생한 얘기를 듣는 공감소통 ‘두런두런 정책좌담회’ 세 번째 시간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석 의원)는 4월 21일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우리에게는 실패할 권리와 도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주제로 제3차 두런두런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좌담회는 제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경희 교육연구팀장의 진행으로 고연경(청소년), 권도현(청소년), 김승현(청소년), 이경안(청소년), 기태영(가명, 청소년)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로 일찍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제주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으로 마련되었다.

2부에서는 이들 당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손태주 연구원(제주여성가족연구원), 양명희 센터장(제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양시연 국장(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김순관 국장(제주도교육청 교육국), 김태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제도·정책적으로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어려움의 원인과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김태석 위원장은 “매년 5~6만여 명씩 총 39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다른 부득이한 이유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른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은 더 이상 우리사회의 부적응자나 낙오자가 아니다.”라며, “청소년의 자기결정과 주체적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과 노동 등 삶의 미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존



비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지원은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검사위원 신화역사공원 사업 현장방문 김용범 위원장 등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가 4월 18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348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가진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김용범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정훈 공인회계사를 간사로 각각 선임하였다

이어 결산검사위원은 4월 21일 신화역사공원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현장에서 김용범 대표위원은 “진행 중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지역업체 참여 기회 제공 및 도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산검사는 4월 18일부터 5월 12일까지 25일간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와 교육청에 대해 실시하게 되며,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게 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 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며,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별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목적에 적합한 집행, 불요불급한 사안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게 되고, 전년도 결산 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시정 및 개선되었는지 여부도 검사한다.

행정자치위원회

201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3건 심사보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의원)는 4월 7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제주스마트그리드홍보관 기부채납', '제주에너지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처분(양여)' 3건에 대해 심사 보류했다.

한전은 지난 2010년 93억 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지상 3층(3,547㎡) 규모의 제주 스마트그리드 홍보관을 조성했다. 이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 운영 기간이 끝남에 따라 도에 무상으로 기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한전으로부터 홍보관을 기부채납 받은 뒤 이를 다시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의회에서는 홍보관이 가설건축물로 지어져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사업 실효성, 활용계획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하였다.

또한,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유의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주차장 부지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변경안을 부결시켰다.

"JDC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에 들어온 공기관인데 주차장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필요가 없다고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JDC 본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결하였다.

4월 10일 열린 제3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손유원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차문제,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

는 상황임에도 제주도 전체면적의 22%를 국립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국립공원을 확대하려면 국가가 땅을 도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개인 땅을 매입해 비축토지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원 지사는 "국립공원을 지정하면 국가가 땅을 매입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중앙정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10일 도정질문 첫날 마지막 순서로 나선 강경식 의원은 전문기관의 사업검토의견 미수용, 자본 검증 미흡, 제주시 주변 상권 피해 등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우선, 제주도가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의 검토의견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대규모 개발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총괄 검토 의견과 중산간 지역 보전을 위해 대규모 지구단위 지정을 통한 개발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아울러 투자자본이 조세 회피처에 있는 기업이면서 대표이사가 중국인으로 바뀌고 누구의 자본인지 알 수 없음을 강조했다.

오라 관광단지 상업지역 규모도 중앙로 지하상가의 21배에 달하기 때문에 인근의 연동 상권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텐데 공청회 한번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음을 추궁했다. 11일 속개된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상봉 의원은 "제주도가 2005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지만, 현재 현실을 보면 평화의 섬이 아닌 긴장 고조의 섬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으로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도 2009년 기본협약 당시 나왔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제주는 줄 건 다 주지만 제주에서 요구한 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남부탐색구조부대가 국방부 중기계획에 계속 반영되고 있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데 실질적으로 군비 증강이 이뤄지고 있다. 해병 9 여단, 해군기지의 잠수함대를 기지전대로 바꾸겠다고 하는 등 전투부대가 다 들어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경희 의원은 13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초등 돌봄교실' 정책의 열악한 실태 개선을 주문했다.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이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방학 때는 빨리 끝내거나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일과 가정 양립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교육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저녁 돌봄을 위해 위탁 돌봄이 이뤄진 것을 감안한다면, 저녁 돌봄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전면 직영해야 하고, 초등 돌봄교실의 예산을 제도화 해 학급 수나 지역에 관계없이 적정 운영비가 편성되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교실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돌봄 전담사의 인력을 충원하여 운영의 질을 높이고, 초등 돌봄교사의 근무 시간을 현실화하고 자가격주 수당을 지급해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촉진 지원된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촉진이 지원될 전망이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조례가 오는 7월 발의를 예정으로 TF팀 구성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과 이상봉 의원은 4월 2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내 관련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도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공익 활동 촉진 조례 제정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발의를 위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TF팀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서울, 대구, 충청남도 등 타 시도 유사 조례와 센터 운영 현황 등을 검토했다.

또 조례의 지원 대상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 기존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을 구분하여 지원방법을 마련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거창한 활동이 아닌,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공익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4·3 활동백서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의원)는 4월 7일 의장실에서 4·3 활동백서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 위촉식을 마련했다.

4·3 활동백서 편집위원으로는 장정언 전 제주도의회 의장, 양조훈 도교육청 4·3 평화교육 위원장, 김창후 제주특별자치도 4·3 유적지보존위원장, 김기삼 제주섬문화연구소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 김은희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이 참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 발발 70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2017년 재구성된 제10대 도의회 4·3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해 그동안 진행 과정 및 결과, 4·3 문제의 해결 과정 등을 정리하여 백서로 발간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무를 되새겨 앞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는데 이바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처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의원)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복지지원을 하고자 김용범 의원이 발의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장과 읍·면·동장을 추가하고, 위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강화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문에 대하여 위법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정하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파도를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간 추진해오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성별 균형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해 수정가결하였다.

이 밖에도 위원회 제안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태풍 “차바” 피해 복구 추진현황 점검 및 서귀포의료원 현장 방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4월 5일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하천 및 저류지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서귀포 남원 대흥1리 어항, 서중천과 제주시 한천 및 병문천 저류지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지난 2016년에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해 발생한 피해 시설물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신속한 피해복구를 주문했다.

그리고 이날 서귀포의료원도 방문하여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집단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추후 가까운 시일 내에 서귀포의료원의 비상진료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도 들을 예정이다.

제주복지 10대 과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의원연구모임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 유진의 의원)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마련한 ‘2017 제주사회복지포럼’이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제주복지 10대 과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해 개최된 「제주복지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제주복지 10대 과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사회복지포럼에서는 심경수 교수(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가 ‘제주복지 10대 과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행정, 의회, 복지현장, 시민사회, 연구기관(학계)의 역할을 제언함과 동시에 제주복지 원탁회의에서 제기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 부재’와 ‘전문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를 위해서는 제주형 사회복지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위원회 고보선 위원장(제주국제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및 복지공동체포럼 의원, 각 분야별 복지현장 전문가, 학계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제주복지 10대 과제’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김용범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 사회복지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현장의 소리가 정책화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공동주최한 제주복지공동체포럼 유진의 대표의원은 “오늘 포럼은 지난해 개최된 200인 원탁회의의 소중한 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정책화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복지 정책, 도민의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적정수준의 복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였다.

제주 보육정책 개선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4월 2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등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국영유아보육학회 김종필 연구위원이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제주도 보육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맞춤형보육사업의 개선, 보육에 대한 신뢰와 CCTV의 공존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고, 제주 어린이집 532개소 중 76개소(14.3%)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어린이집(2017년 3월 기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제주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보육 서비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보육교사는 진심을 다해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만 제주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며, “맞춤형 보육사업, CCTV 제도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린이와 학부모, 보육교사 사이의 신뢰가 높아지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등 환경 분야 안건심사

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주변 영향 저감방안 마련 촉구



도민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관련해 현장방문을 시행하고, 사업구역의 경관, 지형적인 부분을 확인했다. 안건심사와 관련해

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도민사회에 얽혀있고, 대규모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중산간 개발로 인해 해안 용전수가 고갈될 위험이나 사업부지가 경사 지형으로 집중 호우 시 하류 지역에 위치한 도심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사업비가 6조를 넘어서는데 자본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과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하수 처리나 중수 사용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검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안전상정을 보류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은 중산간 지역 환경 훼손,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57만㎡라는 대규모 개발면적, 3,650톤이라는 과도한 지하수 사용 등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들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도민사회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5월 중 전문가 집단, 지역주민 등을 한 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상정 심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0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99,416㎡에 대해 기 허가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요석산업에서 사업면적을 168,658㎡로 토석채취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요석산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심사해 주변 지역으로의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 이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완충 구역 훼손방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과의 협의 진행,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 발파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야생동물 피해 저감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부대 의견을 제시하고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서귀포 부영아파트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진정의 건 심사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의원)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서귀포 부영아파트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진정의 건'을 심사했다.

진정내용은 서귀포 부영아파트 임대 전세금 5%의 인상과 아파트 하자보수 처리 요청의 건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게 되어있고, 임대료의 증액과 관련한 분쟁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도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질책하고, 하자 건과 관련하여 설계상, 시공상 문제인지, 또는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임대료 인상 문제는 주변지역 임대료를 감안해 적절한 선에서 책정되도록 중재 노력하고,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입주자들에게 하자보수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로 이송했다.



제주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제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의원)는 4월 21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란 용도변경으로 인한 우발적 이익을 사회적 공유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불식시키는 물론 신뢰성·투명성·안정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민간투자 활성화와 제주의 균형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계획변경 개발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날 워크숍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은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으나, 사업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제주지역 전반에 대한 이익 공유와 환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떨어짐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주관해 제주도 도시계획 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으며, 이날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사업추진 시 수반되는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제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개발이익환원 및 지역공유를 유도하고 사회적 갈등요소 및 특혜시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비엔날레, 불통 지적

제350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의원)는 1건의 조례개정 심사 및 2건의 민간위탁 사무를 보고 받고 제주비엔날레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제주도립미술관을 현장 방문하였다.

2009년 개관한 제주도립미술관은 이듬해인 2대 관장부터 지금까지 전문직 관장으로 공·선임되어 왔으나, 개관 10년이 돼가도록 특화된 기획전시는 없는 실정이다.

올해 10억 원의 비엔날레 예산반영과 더불어 추진 과정상의 문제와 계획 부족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오자, 미술관 내의 역할분담 미흡, 불통은 물론 홍보 부족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해 집중 질의 되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관광이란 불명확한 주제설정과 지역주민과 지역예술인들과의 소통 부족은 물론 홍보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선화 의원과 김동욱 의원은 진행조직 간 갈등과 프로그램의 반대성에 대한 문제점, 김명만 의원은 주제와 괴리된 사업추진들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장에 유형별 관광 약자의 접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유진의 의원 대표발의로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주호민 작가, “제주신화 콘텐츠 활용도 기대가치 높아”

제주문화관광포럼 제37차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관광포럼(대표 이선화 의원)은 4월 1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제주신화의 재발견’을 주제로 제37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1세기는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가 주도하는 사회로서 최근 IT산업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문화를 이용한 CT(문화기술)사업에 대한 확장은 급부상하고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더불어 문화콘텐츠 산업은 OS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신화를 활용한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

가 영화로 제작, 방영될 계획으로 제주신화 콘텐츠에 대한 재발견의 계기가 된 것을 기회로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신화의 가치에 대한 김정숙 신화연구가의 발표에 이어, 주호민 작가로부터 〈신과 함께〉라는 만화를 통해 보여준 제주신화의 가능성을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선화 대표의원은 “제주신화의 콘텐츠를 21세기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가기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은 물론 제주신화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면서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해녀, 전문가들이 말하는 제주해녀문화 전승 방안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토크콘서트 개최

해녀들과 해녀전문가들이 말하는 제주해녀문화 전승 방안은 무엇일까?

그 방안을 듣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의원)가 4월 2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해녀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의미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점점 사라져가는 제주해녀 유산에 대한 해녀문화의 전승방안과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방안 등을 짚고 정책방향 제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당사자인 해녀와 해녀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제주해녀문화는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에 이어 제주에서는 2번째로 등재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개인 전승의 무형유산이 아닌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이기 때문에 세대적 전승을 통한 가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그럼에도 해녀의 고령화와 바닷바람의 생태학적 여건은 해녀 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제주해녀 유산에 대한 해녀문화의 전승방안과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방안 등을 짚고 정책방향 제시의 필요성을 인식, 제주해녀문화 전승 방안을 찾아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는 제주 사회에서 문화사적 측면의 탁월한 가치평가에 따른 전승방안에 대한 논의를 민속분야의 한 축에서 어업인과 문화민속분야의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지정무형문화재 제1호인 보유자(강등자, 김영자)가 직접 출연하여 해녀노래의 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날 토크콘서트는 유철인 교수가 ‘제주해녀문화 : 유네스코 등재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목으로 해녀의 생업과 물질소득, 해녀건강, 콘텐츠로서의 방안 등에 대해 기초발표가 있었다.

이어 해녀이야기 바당 섹터에서는 흥경자(전 한수리어촌계장), 강애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장), 조남용(사, 해녀문화연구원), 오한숙희(방송인), 고미(제민일보 문화부 부국장), 홍성직(제주K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 김창선(도 해양수산국장),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가 참여하여 해녀와 전문가가 보는 해녀문화의 전승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행사를 주관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제주 경제문화의 상징인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그 등재의미와 전승방안을 모색하여 문화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회



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개최 사유를 밝혔다.

신관홍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하고 “해녀의 고령화와 해녀 수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론했다.

신 의장은 이어 “오늘 이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해녀문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제주해녀들의 숨비소리가 바다를 풍요롭게 만들고, 제주문화가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감귤연합회 역할과 기능 강화 등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의원)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청원의 건,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된 주요 안건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우범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감귤출하연합회 역할과 기능 강화, 풋귤 출하 기간의 탄력성, 신규 조성한 감귤원을 10년 경과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장변화와 시행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한 수정과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 수정 및 상임위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했다.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청원」의 건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강정천 수자원에 영향 및 지하수 관정 기부채납과 관련 특혜 또는 위법사항의 문제가 있어 사업의 승인을 불허할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임위에서는 중산간 난개발과 생활용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 개발 문제 등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돌송이 녹차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지정 전에 관련 법 및 조례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부당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승인과정 등을 포함한 진행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것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제주테크노파크,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방문

농수축경제위원회는 4월 6일, 제35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벤처마루를 방문했다. 벤처마루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JTP) 본부가 있는 곳으로 지난 11월 1일 제주테크노파크(JTP)의 제3대 원장으로 취임한 ‘허영호’ 신임원장의 조직운영 방향 및 비전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제주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현황 및 건의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이와 더불어 벤처마루에 위치해 있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운영현황 점검 및 입주기업들과의 면담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벤처마루에는 1인 창조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주)비전텔리넷 등 40개사의 입주기업과 196명의 직원들이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벤처마루에서 제주테크노파크(JTP) 주요사업 현황보고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후 사업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아라동에 위치해 있는 바이오융합센터 화장품 공장도 견학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4월 18일 김태익 제3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농수축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김 예정자는 CEO 경험이 없어 제주에너지공사의 산적한 현안과 문제해결, 조직의 안정화, 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위기관리, 주요 정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 예정자는 전력계통 분야에 전문기술인으로 경험과 기술은 풍부하나 리더십과 의사결정 능력의 경험은 전무한 실정으로 제주의 에너지정책을 이끌고 조직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데 있어 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얻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제주의 청정가치를 높이고, 공공주도의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적이고 주도적 운영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2012년 설립된 제주에너지공사를 수익창출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공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약자 지원, 고용안정화 및 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의지가 강하고, 직원과의 소통·혁신을 통한 조직의 안정화, 생산성 향상 등 경영자로서의 의욕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도교육감 행정 권한 위임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 교육의원)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 기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44건, 총 4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지난번 상정보류되었던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 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7급 이하의 승진 임용, 지방공무원의 정기 승급 등 학교장 등에게 위임되었던 사무를 다시 상급기관의 사무로 조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 경감의 측면은 있으나, 행정권한의 상징성, 교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사무는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 되었다.



도교육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4건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3월 8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무를 처음 민간 위탁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서 교육감으로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44건 제출되었다. 도교육감이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또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제고라는 공익 추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도별 민간 위탁 사업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7년도의 경우 2014년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비춰볼 때 앞으로 민간 위탁 사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회는 민간 위탁 사업은 어디까지나 교육감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를 민간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수행케 하는 것이니만큼 민간에 위탁하였다고 하여 위탁 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까지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탁 기관 선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처리 결과뿐만 아니라 수시로 감시하여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예산하고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성과 평가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꼭 필요한 분야의 사업들만 민간위탁을 하고 자체 인력 자원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동의안은 이미 예산이 확정된 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 성립 후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불가피성이 있지만 향후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예산 성립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조례안 의결

오대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어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보장 적용대상, 생활임금액의 결정,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만큼 보전금을 지급함으로써 다소나마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열악한 보수를 지원받고 있는 교육 공무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교직원 경험과 전문성 활용한다

도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 발의

퇴직 교직원의 전문지식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퇴직 교직원의 활동 지원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광수, 박규현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 교직원 활동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임시회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시백 의원은 “평소 퇴직 교직원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에 고민해 왔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교직원들이 퇴직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퇴직 교직원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장려하여 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더불어 장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역할을 찾도록 하고 싶었다”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탈북가정 청소년 위한 조례 제정된다

박규현 의원 대표발의, 강시백, 김광수 의원 동참

제주에 거주하는 탈북가정 청소년들이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한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시백, 김광수 의원이 참여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 청소년교육지원 조례안이 그것.

이 조례안은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 출생으로 인한 언어 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치고 5월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박규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고자 이에 대한 자치법규 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입법 취

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탈북가정청소년이 남북한 교육의 차이, 탈북과정의 학업결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대비하여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해서 한민족으로서 탈북가정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고, 통일시대의 인재로 성장하여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한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탈북가정청소년이 학교에 적응하여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17명(2016. 4월 기준)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탈북가정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19개교에 27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법정보



법령 제·개정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거용 시설의 경우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해당 주거용 시설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14116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3.30

◆ 개정이유

-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거용 시설의 경우 현행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 등과 동일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고, 이용자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해당 주거용 시설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소음대책사업계획상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기존의 학교 및 기존 주거용 시설 외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을 포함함(제8조제1항제3호 신설).
- 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제74조의 2항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공고 2017. 3. 2.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제74조의 2항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60조의2(「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란 다음 각호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여행업
4.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5.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면세업

국회 의안 정보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 안 일 : 2017. 03. 29.
- 의 결 일 : 2017. 03. 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대체산립 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반출을 허용하며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체산립자원조성비의 카드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제10항).
- 나. 토석 채취에 대한 범위를 채취, 가공 및 반출하는 경우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 다.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 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함(안 제40조의2).
- 마.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 바.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점입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46조의3).
- 사. 청문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49조).
- 아.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하게 함(안 제51조).

법령 해석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041, 2017.3.31. 민원인]

〈사례 예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지형 연립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이 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20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

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인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연립주택의 기준이 되는 면적 및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립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단지형 연립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에 속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 부속용도는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연립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1층 중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1층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구분하여 아파트·연립주택에 대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다세대주택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와 달리 1층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연립주택에 대하여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주택의 층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 하나로 끝

－ 2017년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4개 과제 확정·추진 －

- 스마트폰을 활용해 낡은 가구 폐기물을 손쉽게 처리하고 소외계층의 경우 카셰어링업체 등을 활용해 휴일에 관용차량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이 시범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국민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2017년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4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영상인식기술 활용 대형폐기물처리서비스(은평구) ▲자연어 인식 기반의 지능형상담(챗봇)서비스(대구시) ▲소외계층에 대한 관용차량 카셰어링 서비스(경기도) ▲드론 활용 현장행정 구축(부산, 충남, 제주) 등 총 4개 과제다.
- 영상인식기술 활용 대형폐기물처리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찍힌 폐기물 사진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식별하여 종류, 크기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위치까지 전송하는 서비스다.
-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대형 폐기물 처리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스티커를 구입한 뒤 부착해 버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 행자부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컴퓨터가 객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120여 가지의 품목당 약 1만장의 사진을 딥러닝(기계학습)해 학습데이터로 구축할 계획이다.
- 자연어 인식 기반의 지능형상담(챗봇)서비스는 콜센터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지식 유형으로 구축하고 인공지능이 민원인의 질문내용과 의도를 파악한 뒤 분석을 거쳐 정확한 답변을 도출한다.
- 현재 일부 기관이 도입한 챗봇은 단순 시나리오 기반의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응답률이 높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컴퓨터가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연관관계를 정의한 ‘온톨로지’ 기반의 학습화를 통해 정확한 질문과 답변을 유도한다.
- 소외계층에 대한 관용차량 카셰어링 서비스는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기초수급 대상자 등 소외계층이 편하고 쉽게 무상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3일 걸리던 행정 처리를 단 1시간으로 단축하고, 차량에 사물인터넷(IoT) 단말기를 부착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 드론 활용 현장행정 구축 사업은 공유지의 불법점유물 단속에 드론을 활용한 2015년 사업을 확산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부산, 충북,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교량 점검, 비탈면 관리 등 지자체 현장행정업무 전반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 행자부는 올해 사업을 민관 협업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사용자 앱을 만들지 않고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는 공공과 민간에 개방·공유할 뿐 아니라 연구개발 등에도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이들 사업 중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등을 공공분야에 적극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술과 서비스 효과를 검증하고 그 성과를 민간과 공유해 공공의 정책과 민간의 역량이 융합되는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22만 건 추가 발굴해 지원

올해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 2회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12월에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대상자임에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395천 명을 추출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한 결과, 그 중 220천 건(175천 명)을 추가 발굴하여 요금감면 지원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 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하여 요금감면 일괄신청 대행을 시행해 오고 있다.
- * (2015. 4월~2017. 2월까지 신청 현황) 도시가스 222천 가구, TV수신료 61천 가구, 전기요금 133천 가구, 이동통신요금은 207천 명 등 총 623천 명(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
- 보건복지부는 요금감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요금감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2015년부터 매년 1차례 시행해 왔다.
- ’15년도 실시한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에서는 요금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334천 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추출하여 신청을 안내한 결과, 그 중 75천 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 이번엔 실시한 2016년도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에서는 요금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395천 명을 추출하여 신청을 안내한 결과, 2017년 2월말 기준 220천 건(175천 명)을 추가 발굴하여 요금감면 지원혜택을 제공했다.
- 이는 전년 대비 133% 증가(100천 명)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사), KBS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도움과 요금감면 지원의 결과이며, 또한, 전체 요금감면 대상자 정보와 복지대상자 정보의 연계를 강화하여 감면대상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안내발송 업무를 쉽게 한 것도 발굴 건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요금감면을 못 받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을 상시적으로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2017년 6월부터 대행할 예정이다.

오늘은 내가 도의원, 제주의 미래 내가 이끈다!

신산초등학교 학생 21명, 모의의회 체험 행사 가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가 추진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의 첫 테이프는 서귀포시 신산초등학교가 끊었다.

신산초등학교 학생 21명은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 체험’ 행사를 가졌다.

모의의회 체험에 참여한 신산초등학교 학생들은 개회식 후, 본회의를 열어 모의의회 회기 결정의 건과 도정에 관한 질문,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학습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교사의 일기장 검사 금지 조례안과 초등학교 교과학원 수강시간 제한 조례안, 그리고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 등 6건의 모의 안건을 상정하여 질의·답변·토론·표결을 거쳐 최종의사를 결정하는 전 과정과 5분 자유발언 등 의사 진행 과정을 체험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하는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은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의 진행 체험과 시설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모의의회 체험’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학습 기회를 주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학생들이 각자 의원의 역할을 맡아서 실제와 같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도민 여러분, 언제든 방문하세요”

의원회관 옥상에 도심 속 정원 조성

도의회 의원회관 옥상이 녹색 정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4일부터 녹색 정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의원회관 옥상을 도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그동안 딱딱하고 무거운 관공서로만 인식되던 도의회 청사 옥상에 꽃과 나비, 새들이 찾아오는 ‘도심 속 정원’을 조성하여 의회를 찾는 도민과 직원들에게 도심 속 전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의원회관 옥상에는 산책로, 전망대, 파고라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은목서, 산딸나무, 철쭉, 옥잠화, 백리향, 돌단풍, 맥문동 등 다양한 나무와 잔디가 식재되어 있다.

도의회에서는 4월 14일 현장에서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옥상 정원 조성개방을 기념하는 간단한 다과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관홍 의장은 “이번 옥상녹화사업을 통하여 의회를 찾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쾌적한 청사 환경이 조성되었다. 많은 도민의 의회 청사를 집정원처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도의회에서는 옥상 정원 조성으로 청사 실내온도가 여름에는 2~3℃ 가량 감소하고, 겨울에는 2℃ 가량 증가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 대정읍을 만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가 추자면, 우도면에 이어 대정읍을 찾았다. 도의회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 상담팀은 4월 27일 대정읍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제도개선분야에 대한 상담활동을 펼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를 매월 운영하며 지역 현안과 계층별 고충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함께 해당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1대1 현장 상담을 통해 도민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대정읍 지역은 마늘 주산지인 만큼 수확철을 앞두고 마늘종 뽑기 작업 일손으로 분주하여 잠

시 시간을 낼 수 없어 직접 상담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많다고 판단, 도의회 홈페이지 내 개설 운영 중인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이용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등 많은 제안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3월 추자 및 우도에서 실시한 이동상담소 운영결과, 각종 법률상담 24건 및 제도개선사항 6건 등 30여건을 접수 처리하거나 개선 중에 있으며 상담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평소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들이었고,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Q&A

우리 생활 속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알아봅니다.

Q: 처벌을 받지 않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기준은 얼마인가?

A: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식사 접대의 경우 별개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평균 금액으로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평균 식사금액이 3만원을 넘는다면 참석자 모두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각자 자기 몫의 돈을 냈다면 관계없다.